일제의 조선침략의 원흉인 이또 히로부미에 대한 찬양의 부당성

김 병 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계적으로 제일 간악한것은 일본제국주의자들이였습니다.》(《김일성전집》 제90권 333폐지)

《명치유신》이후 일제는 조선침략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으며 그중에서도 이또 히로부 미는 가장 간악한 조선침략의 원흉이였다.

그런데 《대동아공영권》을 떠들던 일본군국주의가 패망한지 70여년이 되여오는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일본에서는 이또에 대한 찬양이 끊기지 않고있으며 이또 유끼오를 비롯한력사를 연구한다는 학자들속에서까지 《이또는…조선의 근대화를 달성하고 일본의 안전보장과 조선의 독립을 보존유지하려고 하였다.》느니 하면서 이또 히로부미를 미화분식하고있다.

이러한 견해는 조선침략의 원흉으로서의 이또 히로부미의 죄악을 찬양, 은폐하는 부 당한 궤변이라고밖에 달리는 말할수 없다.

이또 히로부미에 대한 찬양의 부당성은 무엇보다먼저 이또가 《명치유신》이후 일본군 국주의의 조선침략정책을 앞장에서 집행해온 괴수이기때문이다.

1868년 명치정부수립이후 여러 관직을 력임하면서 군국주의적정치경제체제를 축성하는데 광분하던 이또가 조선침략에 직접 손을 뻗치기 시작한것은 1885년부터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명치유신》직후부터 《정한론》을 제창하면서 그 목적을 쉽게 이룰수 없게 된 주요한 원인의 하나는 조선에 대한 청국의 간섭이였고 구체적으로는 청국군대의 조선주둔이였다. 특히 1882년 임오군인폭동을 계기로 청국에 사대하고있던 명성황후일파의 책동과 조선을 다른 렬강들에게 양보하지 않으려는 청국의 대조선정책의 결과 조선에는 청국군대가 주둔하게 되였다.

한쪽으로는 일본국내의 군국화를 발광적으로 다그쳐 병력을 증강하면서 전쟁에 복무하는 경제력을 강화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유미렬강의 지원을 받으면서 조선침략준비를 다그쳐온 일본에 있어서 조선에 주둔하고있는 청국군대는 암적인 존재와 같은것이였다.

조선에서 청국군대를 내몰고 나아가서 청국의 조선에 대한 간섭을 끝장내는것은 일 본의 조선침략실현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그러나 당시까지만 해도 청국과 전쟁할 준비를 갖추지 못하였던 일본은 외교적방법 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1885년 2월 청국파견 전권대신으로 임명된 이또는 청국의 천진에 가서 리홍장과 여러차례 담판을 진행하였으며 온갖 감언리설과 위협공갈을 통하여 4월 18일에 《천진조약》을 체결하였다.

《천진조약》은 일본의 조선침략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였다. 그것은 조선에서 일본군 보다 우세한 청국군대를 철거시키게 하였으며 당시 청국이 불리한 대내외정세로부터 약 화된 기회를 리용하여 일본의 조선침투를 촉진할수 있게 하였고 만일 앞으로 청국의 조 선출병이 있는 경우에도 일본이 무력을 파견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기때문이였다.

후에 일본외무대신 무쯔가 이 조약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청국정부가···조선에 주둔한 군대를···철거하지 않을수 없는데 이르렀을뿐만아니라 장래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려고 할 때에는 우선 일본정부에 통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조관을 구비한 조약을 체결한것은 청국에 거의 일대 타격이 가해진것》이라고 말한것은 이또의 《공로》를 높이 평가한것이였다.

이또는 이해 12월 초대일본내각총리대신으로 취임한 이후 조선에 대한 정치, 군사, 경제적침투를 강화하여 침략의 길을 더욱 확대하였다. 1894년 7월 두번째로 내각총리대신이 된 이또는 《명치유신》후 일본이 벌린 첫 해외침략전쟁인 청일전쟁의 준비와 도발, 결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청일전쟁은 철두철미 조선에 대한 청국의 영향을 끝장내고 조선을 먹기 위한 전쟁이였다.

이또는 1894년에 조선에서의 갑오농민전쟁을 계기로 조선봉건정부가 청국에 원병을 요청한것을 절호의 기회로 삼아 《공사관, 령사관보호》와 《일본거류민보호》라는 부당한 구실을 내대고 1만여명의 무력을 동원하여 조선에 대한 대규모적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일본의 1894년 대규모적무력침공의 목적은 청일전쟁을 도발하여 조선에서 청국세력을 완전히 구축하고 조선을 저들의 지배밑에 넣으려는데 있었다.

이때 이또는 전쟁도발의 구실을 만들기 위한 일본과 청국의 《공동진압안》을 직접 발기하고 그 연장선에서 조선봉건정부에 《내정개혁안》을 강박하였다. 그리고 예측했던대로 그것이 청국으로부터 거부당하고 조선봉건왕조가 일본군의 철수를 요구하자 1 500명의 병력과 8문의 대포까지 동원하여 조선왕궁을 습격하는 횡포무도한 만행을 감행하였다.

조선왕궁습격사건은 조선봉건왕조를 저들의 손아귀에 틀어쥐고 청일전쟁도발과 수행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목적으로 감행된 주권국가에 대한 가장 엄중한 자주권유린 범죄였다.

이 모든것을 조직지휘한자가 바로 이또 히로부미였다.

이또는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난 후 청국으로부터 《조선은 완전무결한 자주독립국》즉 조선에 대한 청국의 간섭을 끝장내고 일본의 지배권을 인정받는 《시모노세끼강화조약》에 일본측 전권대표로서 조인하였다.

이또는 청일전쟁의 결과를 부정한 《3국간섭》이후 짜리로씨야의 조선침투가 강화되고 명성황후가 친로파로 기울어지면서 조선에서 일본의 지위가 위태로워지자 그를 막아보려 고 1895년 10월 을미사변을 감행하여 주권국가의 황후를 살해하는 극악무도한 만행도 서슴없이 조작하였다. 명성황후살해를 현지에서 집행한것은 공사 미우라와 그 졸개들이였 지만 그를 계획하고 지휘한것은 이또였다.

그러나 일제는 을미사변을 통하여 자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것은 명성황후 살해가 《아관파천》으로 이어지고 짜리로씨야의 조선침투가 더욱 강화되였기때문이였다.

당시 추밀원 의장이였던 이또는 로씨야에 직접 찾아가 《만한교환론》(조선과 만주를 바꾸어 가지자는것)을 제기하였으나 그것이 짜리로씨야로부터 거절당하자 드디여 전쟁의 방법으로 조선지배권을 강탈할 야심을 품고 1904년 2월 8일 로일전쟁을 도발하였다.

전쟁도발직후 이또는 조선황실을 위문한다는 특파대사의 명목으로 조선에 직접 기여

들어 한쪽으로는 뢰물로 회유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고종황제에게 《일본을 신뢰하고 일본 과 주의방침을 같이하며…만일 그 방침을 정하지 않을 때에는…적대적행동으로 나오지 않을수 없다.》라고 위협공갈하였다.

이 시기 조선봉건정부에 대한 내정간섭권을 규제한 《한일의정서》와 《한일협정서》의 조작은 모두 이또의 간계에 따른것이였다.

이또는 일본이 려순요새전투를 계기로 전쟁에서 우세를 차지하였을 때 교활하게 당시 미국대통령 시어더 루즈벨트의 동창생인 가네꼬 겐따로를 미국에 파견하여 강화알선을 의뢰하였다.

결국 1905년 9월 짜리로씨야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도보호 및 감리》의 권리 즉 지배권을 인정한 《포츠머스강화조약》이 체결되였다.

이또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즉시 일본내각에서 이미 방책으로 정한 《보호》의 간판 밑에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데 달라붙었다.

1905년 11월 이또는 직접 《보호조약》초안을 품고 조선에 기여들면서도 겉으로는 조선《황실위문》의 목적을 표방하였다. 이에 대하여 호전적인 군국주의자인 다나까도 《이또의 조선방문은…황제위문을 위하여 파견된것이라고 하였으나…(조선에서) 일본의 우월권을 설정하려는 사명을 띠고 파견된것이다.》라고 고백하였다.

이또는 일본군무력을 동반한 조선주둔군사령관 하세가와와 함께 고종황제와 대신들에 대한 위협공갈, 사기와 협잡의 방법으로 11월 17일 《을사5조약》을 날조하였다.

이로써 이또는 일본이 《명치유신》이래 《정한론》을 실현하기 위하여 오래동안 추구하여온 조선에 대한 식민지화를 결속하는 침략적사명을 수행하였다.

이또 히로부미에 대한 찬양의 부당성은 다음으로 그가 초대통감으로서 조선봉건왕조의 국가적징표를 모조리 말살하고 《합병》을 주도한 원흉이기때문이다.

《을사5조약》의 날조를 계기로 일제는 조선에서 통감정치를 실시하였다.

이때 이또는 당시 추밀원 의장자리까지 내놓고 1906년 3월 초대조선통감으로 취임 하였다.

통감 이또는 말로는 《외교권의 관리》와 《시정개선》을 떠들었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일본반동정부를 대표한 조선에서의 최고식민지통치자였다.

그것은 1905년 11월 22일에 발포된 《천황》의 《통감 및 리사관에 관한 칙령》(칙령 267호)에서 명백하게 규정되였다. 칙령에 따라 조선에서 일본군의 통수권, 통감부령의 발포권과 집행권 등의 방대한 권한을 가지고 조선에 기여든 이또는 한성에 총무부, 농상공부, 경무부 등의 통치부서를 둔 통감부를, 지방의 10여개소(평양, 부산, 인천, 대구, 함흥, 전주, 광주, 해주 등)에는 리사청(일부 지역은 리사청지청)을 설치하여 정연한 식민지통치체제를 수립하였다.

이또는 일제의 대조선정책에 따라 통감정치의 기본목표를 허울만 남은 조선봉건정부의 국가적징표를 깡그리 말살하고 그 존재마저 없애치우는데 두었다. 이를 위하여 이또는 1907년 5월 종래의 박제순내각대신에 보다 친일적인 리완용내각을 일방적으로 조작하고 각료들을 통감부에 호출하여 《···조선의 존재에 있어서 가장 적절긴요한 방침은 성실하게 일본과 친목하고 일본과 그 존망을 같이하는 결심을 하는데 있다.》고 훈시하였다. 이것은 조선봉건정부가 명실공히 일제통감부의 시녀로 되였다는것을 의미하였다.

1907년 7월 이또는 헤그밀사사건을 계기로 조선의 전통적인 왕권을 무참히 유린하였다.

고종황제는 이해 6월에 일제에게 빼앗긴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리준 등 밀사들을 네데를란드의 헤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하였다. 이것은 조선봉건왕조의 주권자로서의 당당한 권리였다.

그러나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또는 펄펄 뛰면서 《그 행위는 일본에 대하여 공공연히 적의를 표하고 협약을 위반》한것이기때문에 《일본은 조선에 선전포고할 권리가 있다.》라 고 고종황제를 위협하면서 이 기회를 리용하여 조선의 황실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형식적 으로 남은 조선의 내정권마저 강탈하려고 획책하였다.

그것은 이또가 본국 외무대신 하야시에게 보낸 극비전문 제55호에서 《이 운동(밀사의 파견)이 과연 칙명에 기초한것이라면…조선에 대하여 국면을 크게 변화시킬수 있는 행동을 취할 좋은 시기라고 믿는다.》고 지적한데서 알수 있다.

이또는 먼저 《을사5조약》을 인정하지 않고 일본에 반감을 품고있는 고종을 황제자리에서 쫓아내기 위한데 달라붙었다. 이또는 고종황제에게 직접 《…폐하가 파견한 위원은 위임장을 가지고있다는것을 공언하고…조선에 대한 일본의 행동을 악의적으로 비난》하였으므로 《이번 사건의 책임은 전적으로 폐하 한사람에게 있다.》고 폭언하면서 퇴위를 강요하였다.

한편 리완용, 송병준 등 매국역적들로 하여금 고종황제에게 압력을 가하도록 사촉하였으며 나라의 대사를 일시적으로 황태자에게 대리시킨다는 고종의 조서까지 날조하여 끝내 7월 20일에는 고종의 퇴위를 조작하였다. 이또는 한걸음 더 나아가 7월 24일에는 《정미7조약》을 날조하여 형식상으로나마 존재하던 조선봉건정부의 내정권을 완전히 강탈하였다.

사실상 당시 조선의 내정권은 일제의 통감부와 친일적인 리완용내각과 1904년의 《한 일협정서》에 따라 조선봉건정부에 파견된 일본인고문들에 의하여 장악되여있었다.

그러나 《정미7조약》에서는 조선정부의 《시정개선에 대한 통감의 지도》(1조), 《법령의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에 대한 통감의 사전승인》(2조), 《고등관리의 임면에 대한 통감의 동의》(4조),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의 관리임명》(5조), 《외국인등용에 대한 통감의 동의》(6조)를 규제함으로써 일제의 조선내정권에 대한 강탈을 합법화하였다.

이또는 조선군대를 강제해산한 주모자였다.

이또는 당시 1만명도 되지 않는 조선군대가 보잘것 없었지만 저들의 지배밑에 있는 조선봉건정부에 있어서 군대의 보유는 허용할수 없으며 저들에게 총부리를 돌릴수도 있다고 보고 조선군대는 외적의 방어는 물론 내란의 진압조차 할수 없는 군대이며 빈약한 재정으로 군대를 유지하는것은 불리하다는 구실을 내세우면서 1907년 8월 1일 아침 일본군무력이 삼엄한 경계망을 편 상태에서 조선군대의 강제해산을 선포하였다.

이또는 조선의 경찰권도 장악강탈하였다.

이해 10월 29일 이또는 리완용괴뢰내각과 《조선경찰관으로 하여금 당면하여 일본관 헌의 지도감독을 받아…경찰사무를 집행시킬것》을 규제한 《경찰사무집행에 관한 협정》을 조작하고 조선봉건정부의 경부고문 마루야마를 경시총감으로, 각도 경무고문들은 각 도 경시로 임명함으로써 조선의 경찰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합병 2개월전인 1910년 6월 24일 《조선의 경찰제도가 완비되였다고 인정할 때까지》라는 기만적조건부로 《조선정부는 경찰사무를 일본정부에 위탁》할것이라고 한 《경찰권양도조약》은 사실상 그것을 선포한데 지나지 않았다.

이또는 조선의 사법권도 강탈한 진범인이였다.

1909년 5월 조선통감직을 사임하고 다시 일본추밀원 의장이 된 이또는 당시 내각 총리대신 가쯔라에게 조선의 사법권을 《순전한 제국정부의 책무》로 하자는것을 제기하여이해 7월 12일 《사법 및 감옥사무위탁에 관한 각서》를 조작하고 조인하였다.

결국 이또 히로부미는 통감정치시기에 조선봉건왕조의 국가적징표를 모조리 말살함 으로써 《합병》의 모든 조건을 마련하였다.

《한일합병조약》은 이또가 죽은 후인 1910년 8월에 날조되였지만 그것은 조선의 《손과 발을 묶은》 상태에서 국호의 말살과 국토병탄을 선포한 《의식》에 지나지 않는것이였다.

일제가 《한일합병의 전구는 이때(이또통감시기)에 이미 정해졌다고 하여야 한다.》라고 한것은 우연치 않다.

일본의 반동문필가들은 할빈역두에서 애국렬사 안중근에 의하여 이또가 격살되자 《이 기회에…일도량단으로 조선을 합병하고 명실공히 우리의 령토로 하여 자유로운 통치권을 행사함으로써 백년의 화근을 근절》하자고 떠들었다.

제2대 조선통감 소네도 매국역적들에게 《성의를 기울여 조선을 위해 힘을 다한 은인을 조선인스스로가 죽였으니 그 속죄를 위해서는 여하한 희생을 하더라도 시비가 없다.》라고 《합병》을 정당화하였다. 이또의 충실한 졸개였던 고마쯔가 《조선합병은 이것(이또의죽음)때문에 그 시기가 현저히 빠르게 되였을뿐만아니라 그 실현을 매우 용이하게 하였다.》라고 이또의 《사후의 공로》를 평가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모든 력사적사실은 이또 히로부미야말로 조선의 《근대화와 독립을 지향한 은인》이 아니라 그와 상반되는 조선침략의 원흉이라는것을 명백하게 말해준다.

전체 조선민족은 이또 히로부미의 조선침략죄행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며 침략의 원흉에 대한 찬양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다.